

의안번호	제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회)	

군인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신원식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성 비위 피해자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군인사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징계권자는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도록 하는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과거 신분별로만 차등화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성 비위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 시 필요사항 마련(안 제22조의3 신설)

- 1) 성 비위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음을 사전 안내
- 2) 피해자에게 통보된 가해자의 징계처분등의 결과 공개 금지

나.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규정 정비(안 제20조, 제21조)

- 1)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대상 상훈 공적을 신분 및 계급별로 차등화

2) 직장내 괴롭힘 등 부당행위를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 사유에
추가

3)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참작한 사유로 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제한

다. 기타 미비사항 개정(안 제9조)

‘진술권 포기서’를 ‘출석 진술 포기서’로 개정(안 제9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”을 “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”로, “진술권포기서”를 “출석 진술 포기서”로, “징계결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(이하 “징계결정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징계의결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진술권포기서”를 “출석 진술포기서”로 하며,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“징계결정”을 각각 “징계의결”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징계심의대상자가 징계처분, 이 영에 따른 징계유예나 국방부령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, 징계유예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.

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상훈법」에 따른 훈장·포장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

가. 장성급 장교, 영관급 장교: 「정부 표창 규정」에 따른 국무총리

이상의 표창

나. 위관급 장교, 준사관, 중사 이상 부사관: 대장급 지휘관 이상의
표창

다. 하사 또는 병 : 중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창

제20조제2항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1항”을 “제1항제1호 및 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19.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

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 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 종류를 한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.

제2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비행사실이”를 “징계권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제3호로 한다.

1. 징계사유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2. 징계권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

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3(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) ① 징계권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. 다만, 피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②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징계감경 및 징계유예 적용 제외 비행사실에 관한 적용례) 이 영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, 제21조제4항 및 제22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)	제9조(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)	제9조(징계등 심의대상자의 출석)		
① · ② (생략)	① · ② (생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	
③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<u>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하여 진술하는 것을</u>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<u>진술권포기서</u> 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<u>징계결정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결정(이하 “징계결정등”이라 한다)</u> 을 할 수 있다.	③----- ---- <u>그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기를</u> ----- ----- --- <u>출석 진술 포기서</u> ----- ----- ---- <u>징계의결등</u> ----- ----- -----.	③----- ----- <u>출석 진술 포기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징계의결</u> ----- -----.		
④징계위원회는 징계등 심의대상자가 제3항에 따른 <u>진술권포기서</u> 를 제출하지 아니하고, 출석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서면심사에 따라 <u>징계결정등</u> 을 할 수 있다.	④----- ----- <u>출석 진술 포기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징계의결</u> ----- -----.	④----- ----- <u>출석 진술 포기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징계의결</u> ----- -----.		
⑤징계등 심의대상자가 국외에 체재(滞在)하거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날부터 50일 이	⑤----- ----- ----- -----	⑤----- ----- ----- -----		

나 병인 경우에 한한다)

<신 설>

2. (생 략)

② 징계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.

1. ~ 9. (생 략)

10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 또는 제14조의4에 따른 재산등록의무나 주식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11. ~ 18. (생 략)

<신 설>

2.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표

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

가. 장성급 장교, 영관급 장교: 「정부 표창 규정」에 따른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

나. 위관급 장교, 준사관, 중사 이상 부사관: 대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창

다. 하사 또는 병: 중장급 지휘관 이상의 표창

3. (현행 제2호와 같음)

② ----- 제1항제1호 및 제2호-----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 제2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·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
11. ~ 18. (현행과 같음)

19.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

<신 설>

제21조(징계유예) ① ~ ③ (생략)

④비행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유예처분을 할 수 없다.

1. 비행사실이 금품·향응의 수수, 공금의 횡령·유용에 해당하는 경우

2. 비행사실이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성폭력범죄, 「군형법」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,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매매,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, 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

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

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권자는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의결 시 참작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감경하거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 종류를 한단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없다.

제21조(징계유예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징계권자는 -----

-----.

1. 징계사유가 제2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

2. 징계권자가 제20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

에 따른 음주운전, 「군사기밀
보호법」 위반의 죄 및 「군
형법」 제80조에 따른 군사기
밀 누설에 해당하는 경우

3. (생 략)

<신 설>

3. (현행 제3호와 같음)

제22조의3(피해자에 대한 징계처
분등의 결과 통보) ① 징계권자
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
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성
폭력범죄 및 「양성평등기본
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의 피해자에게 법 제59조제8항
에 따라 징계처분등의 결과를
통보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
내해야 한다. 다만, 피해자가 있
는 곳을 알 수 없는 등 국방부
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
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② 법 제59조제8항에 따라 징계
처분등의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
자는 그 통보내용을 공개해서는
안 된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
사항 외에 징계처분등의 결과
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
관이 정한다.